



목 차

- I 안전확인 유효기간 변경
- II 안전관리대상 적용범위 구체화
- III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명확화
- IV 리튬이차전지 안전관리 강화

1. 안전확인 유효기간 변경

별표 2 개정

- 유효기간이 5년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던 68종 (운용요령 146품목)위해도에 따라 5년이상 10년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전기용접기 등 72품목 5년, 해충퇴치기 등 11품목 6년, 모니터 등 23품목 7년, 구강세척기 등 8품목 8년, 전동형롤스크린 등 6품목 9년, 전화기 등 26품목 10년

3

2. 적용범위 구체화

1-1 제3조 2항 신설

- 안전관리대상 범위 “1천볼트이하 교류또는직류전원” 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안전전압 기준에 따라 관리대상 범위 구체화
 - 교류 30V이하, 직류42V이하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열, 고전압 발생기기, 물 사용 기기 등 안전 위해 품목은 대상으로 관리

구 분	대 상 품 목
고열을 발생하는 기기	전기담요, 전기침대, 교류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짐질기, 발보온기 등
고전압을 발생하는 기기	교류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등
물 사용 기기	전기세척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등

2. 적용범위 구체화

1-2 별표1,2 비교 신설

- 정격입력 10kW이하인 전기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가정용·상업용 제품 대부분이 1kW ~ 5kW까지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용범위 구체화

대상 품목	현행	개정(안)
전기식기세척기 전기식기건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비고) 정격입력이 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 프리저, 전기냉수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전기냉풍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본기, 상데리아 등	제한 없이 모두 대상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적용범위 구체화

1-3 별표 1, 2 비교 신설

- 전선 및 전원코드류는 통신 및 데이터 전송만이 목적인 것은 제외하고, 전기기기용스위치, 차단기류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것만 대상

-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으로 대상범위 변경

대상 품목	현행	개정(안)
전선, 케이블, 코드류	교류·직류 구별 없이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관리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스위치류 기기보호용 차단기류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한다.

3.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문구 정비

1-1 제3조 4항 삭제

- 용·복합 제품의 주 기능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시험기관 담당자 및 인증신청 민원인의 생각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어 규정 삭제
 -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용·복합 제품을 주 기능으로 적용한다 및 복사기에 스캔·프린트 또는 팩시밀리 등의 기능이 내장된 복합기 단서조항 삭제

7

3.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문구 정비

1-2 별표 2 개정

- 전화기 접속단말기를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로 변경하고, 단서조항에 품목을 표시하여 대상품목 명확화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 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8

3.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문구 정비

1-3 별표 1 개정

- 전기스토브에 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 표현한 펠릿 스토브에 대한 문구 정비
 - “전기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전기스토브” 로 하여 단서조항 삭제하고, “펠릿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한다)” 을 추가

9

4.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전지 안전관리 강화

- 에너지 밀도(400Wh/L이하)가 낮은 전지가 규제 대상에 포함 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어 및 보호회로가 없는 전지 소비자 유통 방지
 - 전지(리튬전지의 경우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인 것) ⇒ 전지 단서조항 삭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안전 기준 요구 사항 충족하도록 규정 신설



10

전기용품안전인증 관련 문의처

<인증제도관련>

국가기술표준원(중북 음성) : 043-870-5441 ~ 9

<시험, 안전기준 등>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경기 군포) : 031-428-7524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구로) : 02-860-136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경기 용인) : 031-679-9605

<불법제품 신고 및 면제업무 >

한국제품안전협회(서울 구로) : 02-890-8300

11

